

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9. 8.(월), 09:30

2. 장 소 :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송도균 부위원장
이경자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건(2008-29-119)

○ 서병조 융합정책관의 보고를 받고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(주)오픈아이피티브이, 하나로텔레콤(주), (주)LG데이콤, (주)KT 등 4개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,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,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인 하나로텔레콤, LG데이콤 및 KT 3개 허가신청법인을 신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안 의결함. 설비투자과 콘텐츠투자가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 관련산업 및 고용유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IPTV활성화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.

※ 오픈아이피티브이는 “재정적 능력” 심사사항에서 기준점수 미달

- (향후계획) 허가대상법인이 1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임

-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(안)

① 귀 법인은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등 관련 법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안을 준수하여야 함

② 귀 법인은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개시하여야 함

③ 귀 법인은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계획, 방송영상산업발전 기여방안,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 계획, 콘텐츠·설비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

④ 귀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주주(5% 이상 주식 또는 자본 소유를 말한다)는 3년간 변경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⑤ 귀 법인은 2009년말까지는 매 분기, 이후 2년 동안은 매 반기별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그 분기 및 반기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
아. 기 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(금)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(10:35)